

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	1999. 2. 26	조례 제1131호
개정	2000. 12. 28	조례 제1227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08. 12. 9	조례 제1630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3. 9. 25	조례 제299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<개정 2018. 7. 31>

1.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
2.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0. 12. 28, 2008. 12. 9, 2010. 11. 25, 2014. 8. 14, 2023. 9. 25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4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(6월 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
3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. <개정 2000. 12. 28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도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 12. 9, 2010. 11. 25>

제9조(수당등)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1. 8. 9, 2018. 7. 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12. 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9 조례 제1630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③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수도과장”을 “상하수도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⑧ 까지 생략

③⑨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상하수도사업소장”을 “맑은물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상하수도과장”을 “수도과장”으로 한다.

④⑩ 부터 ⑦⑨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② 까지 생략

③③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③④ 부터 ⑦① 까지 생략

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맑은물사업소장”를 “환경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3. 9. 25 조례 제29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⑮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환경수도사업소장”을 “친환경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⑰ 및 ⑱ 생략